

特輯 大學 教育課程의 再檢討

大學 教育課程의 體制 分析

全 成 連

(高麗大 教育學科)

1. 序

大學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 가운데에서도 教育課程이야말로 그 대학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다. 세계적인 名門大學들이 예외 없이 오랜 전통 속에서 발전시켜 온 그 대학 특유의 教育課程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運營에 있어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나름 대르의 方式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教育課程의 構成과 그 運營에 있어서 獨創性보다는 共通性이 더 강조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하여 왔다. 현대적인 대학의 역사가 日淺한 탓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無特性의 特성이 보편화된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教育法이라는 法制의 統制裝置이다. 이것은 教育課程 構成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치밀하게 되면 될수록 대학의 教育課程 構成權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1952년에 公布된 教育法 施行令은 대학 교육과정이 法制의으로 體制를 갖추는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自律이라는 대학 고유의 영토가 잠식되는 시발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둘째는 大學 自體의 獨창성 결여이다. 大學擴充期에 새로 신설된 대학들의 學則이나 教育課

程은 대부분 먼저 설립된 대학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學則과 教育課程을 갖게 되는結果를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이 教育法이라는 外的인 統制의 裝置와 대학 자체의 獨창적인 노력의 결여는 대학의 教育課程을 획일화하고 特徵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人的·物的 要因을 포함한 대학의 外形的 構造를 하드웨어에 비유한다면 教育課程의 特성과 그것의 運營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기억 용량이 큰 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가 신통치 않다면 컴퓨터의 기계 장치는 無用之物에 불과할 뿐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에 비교해 볼 때, 教育課程 영역은 상대적인 면에서 落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해방 이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는 180 학점에서 160 학점으로, 그리고 실험대학 체제에서는 140 학점으로 축소되었지만, 教育의 質的改善이란 점에서는 만족할 만한 變化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서 教育課程 領域이라 함은 教科目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는 면, 즉 教授·學習의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教育課程을 말한다.

2. 大學 教育課程의 體制

대학의 教育課程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은 教育法 施行令과 學則이다.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 체제는 1974년 8월 14일에 改正 公布된 教育法 施行令 제 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은 1952년에 제정되었던 것이 여러 차례의 改正을 거쳐서 내용이 수정되어 온 것인데, 현재의 教育課程體制는 대체로 實驗大學 때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教育法 施行令 제 119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과를 一般敎養科目과 專攻科目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一般選擇科目에 대해서는 뚜렷 한구분이 없다.

둘째, 敎養科目과 專攻科目의 目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반 교양 과목이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 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째, 一般敎養科目의 학점 배정 기준으로 전체 과목 학점의 30% 선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업계 학과 중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는例外 규정을 두고 있다.

네째, 國策必須科目를 지정하고 있다. 일반 교양 과목은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과학적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科目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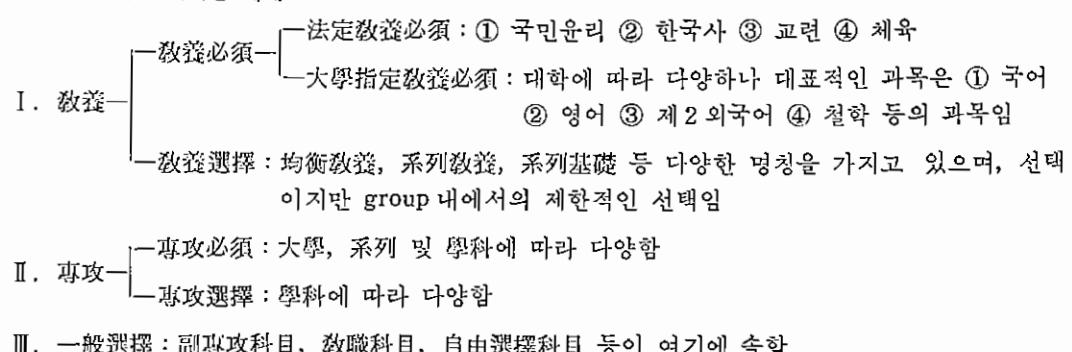
대체로 大學 教育課程에서 敎養教育을 강조하는 입장은 대학을 넓은 의미의 大眾敎育機關으로 볼 때의 觀點인 것이며, 專攻敎育의 강조는 대학을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볼 때의 관점이다.

文敎部에서 대학에 대하여 敎養敎育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는 주문은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專攻敎育 위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각될 수 있다. 문교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입장이다.

180 학점이 졸업 학점이었던 1952년도에 一般敎養敎科는 약 22%가 요구되었으며, 1954년 졸업 학점이 180 학점에서 160 학점으로 축소 조정되었을 때에도 敎養敎科는 30%가 요구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1974년 실험대학이 시작되면서 졸업 학점은 140 학점으로 감축되었으나 역시 一般敎養敎科의 비중은 30% 선이 유지되었고, 이 비중은 '8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30% 속에 과연 순수하게 교양과목만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이와 같은 30%의 규정을 형식상 준수하고는 있으나, 과연 그 과목들이 정말로 敎養敎科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해방 이후 美國式 制度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敎養敎育의 강조가 제도화되었지만, 실제로는 專攻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대학 실정이기도 하다. 咸宗圭의 조사에 의하면 專攻基礎, 共通基礎, 系列基礎, 學科教養, 學科基礎, 基礎必須, 基礎共通, 基本共通, 系列

〈표 1〉 대학 교육과정 체제



學科基礎, 系列共通, 大學基礎, 均衡敎養, 基礎專攻, 系列敎養, 專攻敎養 등등의 대학 지정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명칭을 다양하게 붙이고 있지만, 이들 교과목은 대부분 교양 과목의 성격보다는 전공 또는 전공 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정치학원론을 정치학과의 계열교양으로 부과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인류학과에서 인류학개론을 敎養科目으로 부과하고 있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만일 大學指定 敎養必須와 敎養選擇에서 이와 같은 敎養으로의 분류를 위한 편의상의 과목들을 제외하여 버린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敎養科目은 30%를 훨씬 밀들 것으로 예상된다. 行政的・法規的 틀에만 맞추려고 하는 文敎部와 大學의 편의주의가 각각 大學 敎養教育課程에서 막 맞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3. 大學 敎養課程의 諸 問題

大學 敎養課程에서 발견되는 가장 밀바탕의 문제점은 敎養領域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또 그나마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敎養科目이 人文科學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어학에 치중되어 있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어 중에서는 英語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대학이 많다. 심한 경우에는 영어 계통(과목 명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의 과목이 12 학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²⁾ 英語의 선호는 취직 시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實利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敎養敎育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다.

理想的인 敎養科目을 생각한다면 人文・社會 및 自然科學이 균형을 이루고, 그 외에 文化와 藝術分野, 커뮤니케이션과 과학 기술 분야 등이 꼽고 끼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敎養科目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30%는 대체로 적합하다고 할지

라도 위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전공 영역과 기초 기능 교과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고, 그 内의構造上에 있어서도 문제가 보인다. 즉 敎養科目의 구성에서 共通 또는 必須의 비중이 너무 농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해진다.

1984년도 大學 敎養 및 國民倫理 評價報告書에 의하면,³⁾ 法定敎養必須는 대학 평균 13.9 학점, 大學指定 敎養必須는 17.2 학점으로 교양필수가 31.1 학점을 차지하고 있고, 교양선택은 14.5 학점에 불과한 설정이었다. 교양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앞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專攻敎養이나 系列敎養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이 잠식하는 부분이 많고, 그나마 대부분 몇 개의 科目群 내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밖에 없다.

特定한 敎科目을 必須로 지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강토록 하는 것은 그 科目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에서 일 것이다. 法定必須科目的 지정은 타 과목에 대해서 자연배타적 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1974년 이래 法定敎養必須는 國民倫리, 한국사, 교련, 체육의 4 과목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를 과목이 특별히 우대되거나 보호를 받아야만 된다는 명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뚜렷하기가 않다.

이들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더 중요한 과목인가? 보호를 받아야 할 의미가 있는 과목인가? 보편적 교양의 특성을 많이 담고 있는 과목인가? 소위 국가관 확립에 꼭 필요한 과목인가? 등 어느 準據에 비추어 보아도 우대되거나 보호되어야 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

어느 학문 영역이든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民主市民의 자질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法學을 必須로 해야 한다든가, 국제적인 경제 분쟁의 시대에 經濟敎育은 필수적이라든가, 文化

1)咸宗圭・金光雄, 大學 敎養課程의 改善에 관한 研究, 論文集 제24집, 淑明女子大學校, 1983.

2) 1986년도 대학 교양교육 평가시에 필자가 확인한 S 대학교의 교육과정임.

3)韓國大學敎育協議會, 1984學年度 大學 敎養・國民倫理 評價報告書, 1984. 12.

民族이 되기 위해서는 藝術論을 가르쳐야 된다는가, 또는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이 強化되어야 한다든가 등 예를 들자면 더 많은例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法定必須로 지정된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특별히 法으로 指定해야 할 만큼 절실하고 타당한 根據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韓國史나 體育은 教育法 施行令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國民倫理라는 科目이 대학의 교과과정에 들어오게 된 年代는 뚜렷하지 않으나 1970년에는 서울大에서 必須科目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實驗大學體制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國民倫理는 한국의 미묘한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난 韓國型 科目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哲學이나 倫理學의 代置科目도 아니며 政治學의 한 분야라고 보기도 어렵다. 國民과 國家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간학문적인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윤리’라는 명칭이 별로 매력이 없는지 대학에 따라서는 ‘인간과 국가’, ‘인간과 윤리’, ‘개인과 국가’ 등으로 과목명을 바꾸기도 하였다. 이 과목은 모든 대학이 4학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어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점 배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高麗大의 경우에도 4학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인간’ 부분 2학점은 哲學科 교수 그리고 ‘國家’ 부분 2학점은 政治外交學科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

韓國史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2~3학점을 부과하고 있고 학문의 성격도 분명한 교과목이다. 자기 나라 歷史에 대해서 熟考하고 새로운 의미를 探究하는 것은 국민의 主體性 확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었던 과목인 까닭에 잘못 운영될 경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전부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다. 國史科目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교육과정은 때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충복되는 면도 있고, 질적으로 고등학교보다 뛰어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연계가 부자연스

러운 면도 있다.

‘70년대초에 국민윤리와 한국사 등의 이례적인 부작은 이때에 우리 교육계를 풍미했던 ‘國籍 있는 教育’의 사람이 大學教育의 현장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維新이라는 정치적 파고가 대학의 교육에 밀어닥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어떻든 국민윤리와 국사가 지나치게 편애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 . .

敎練도 그 성격 규명이 매우 어려운 科目이다. 6·25라는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 평시에 준비를 철저히 해두자는 데에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教育課程의 編制에 교육과정 要因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敎練은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우며 더욱기나 敎養이라는 범주에 둑어 두기에는 너무나 異質의 科目이다. 그리고 6학점이라는 비중은 교육과정 전체의 균형을 깨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것이다. 이와 같은 과다 학점으로 인해서 교과 시간표 작성에도 어려움이 많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온다. 敎練을 非學點制의 자원에 의한 군사 훈련 성격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大學生에게 軍事訓練을 시키지 않아도 국방에는 자신이 있다는 판단 아래 敎練科目을 폐지하든지 하는 성숙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法定敎養必修 과목의 하나인 體育은 구태여 필수로 둑어 놓지 않았어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잘 소화해 온 과목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2~4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一般選擇으로 된다 할지라도 體育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敎養科目에 있어서 法定必修의 強化는 保守主義的·排他的·退行의 教育과정 운영 체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特定敎養科目을 법정 필수로 둑어 놓음으로써 특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는 타당성이나 적합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例示된 科目들은 여러 학문 분야의 中心領域도 아니며, 교육의 파급 효과가 큰 것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긴급한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大學指定必修科目은 바로 校策敎養必修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校策敎養必修로 채택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 영어, 제 2 외국어, 철학 등을 포함해서 폐나 다양하다. 영어와 국어는 거의 100%, 제 2 외국어는 45%, 그리고 철학은 32%의 대학이 校策 教養必須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科目들은 기초 기능 교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必須로 지정될 만큼 의미가 있는 教養科目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國史와 마찬가지로 이 과목들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워 온 과목이기 때문에 만일 타성적으로 운영되거나, 절 닻은 교육을 하게 될 때에는 얻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大學이 스스로 정한 것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영어의 경우 2 학점에서부터 12 학점까지 그 학점 차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기능 교과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大學의 멋과 품위 그리고 학문적인 고고함은 퇴색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基礎技能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教授들은 비교적 경력이 부족한 젊은 시간강사들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教養必須科目的 경직성으로 인해서 教養選擇 科목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系列教養, 專攻教養, 系列基礎 등 專攻이거나 전공에 가까운 과목들을 개설하게 됨으로써 教養敎育의 원래 취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教養選擇은 전체 교양 학점의 1/3 선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專攻科目도 크게 必須와 選擇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大學이나 學科에 따라 그 기준이나 원칙에 큰 차이가 난다. 專攻敎養課程은 전공 분야 특유의 知的體系를 습득하고, 직업에 관련되는 독특한 기능을 익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 과목은 學問中心, 學科中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가 분야에 대한 領土意識과 학문적 利己心이 작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 따라서 해당 학문 분야와 학과에서 內面의인 統合의 노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는 排他的인 分化를 계속하게 된다. 專攻科目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나 학과의 利害보다는 그 전공이 속한 학문 세계에서 수락할 수 있는 適合性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專攻敎科體制를 보면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나치게 專攻必須가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대학과 학과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구분에 적용되는 타당한 근거와 원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타당한 원칙이나 근거에 대해서 專攻必須가 설정되기보다는 영향력이 강한 교수가 담당한 과목이 必須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공필수 과목이 고정화되는 경우가 많다.⁴⁾

專攻必須科目的 어떻게 選定하고 運營하는가는 大學과 學科의 사정과 풍토 등에 따라 크게 다양성을 보이지만, 어떻든 많은 大學과 學科에서 이 必須科目的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사실이다.

大學의 教育課程體制에 있어서 教養 및 專攻의 세번째 범주는 一般選擇科目的 영역이다. ‘어느 어느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다’와 같이 一般選擇科목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보아 履修의 의무가 있는 教養科목도 아니고 專攻科목도 아닌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一般選擇科목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一般選擇科목은 의무적으로 履修해야 되는 教養科목은 아니지만, 교양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一般選擇科목은 그 選擇의 폭이 대단히 좁은 것이 현실이다. 제한된 졸업 학점 내에서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지정하고 나면 一般選擇科목으로 남을 수 있는 여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理想의인 大學 教育課程을 말한다면, 이 一般選擇科목의 학점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副專攻이나 教職을 이수한다면

4) 李星鎬, 大學教育課程論,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8.

최소한 21 학점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大學 教育課程 運營體制는 大學 外의 또는 內的 要因으로 인해 매우 경직되어 있다. 우리의 大學 教育課程 및 그 運營體制는 더욱 다양하고, 대학마다 특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획일적·중앙집권적 제도의 채택은 외견상 능률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大學教育의 發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大學 教育課程의 改善 方向

大學 教育課程의 改善 課題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大學教育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예측할 수 있는 전망 중의 하나는 우리의 大學生 人口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대학은 고고한 학문성보다는 더욱 대중적·직업지향적定向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예상되는 현상은 大學 및 大學教育의 質과 效율성을 높이라는 대학 사회 내부 또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째로 대학에 대한(國·公·私立을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대학의自律性은 현저하게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그리고 대학 나름의 특성과 전통의 확립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점이다.

물론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의 대학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大學에서의 變化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公權力에 의해서 오는 외형적 변화, 예를 들면 대학의 신설, 입학 정원의 확대, 대학 건물의 신축 등과 같은 것은 쉽게 오고 또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教育의 內容이나 方法과 같이 大學 内部에서 熟成되어야 하는 變化는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

이와 같이 느린 變化는 교수들의 보편적인 保守性向과 함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의 개발을

위한 대학 나름의 지속적 노력이 부족하였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느린 속도나마 앞으로 우리의 大學 教育課程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先決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 140 학점의 卒業 屢修學點은 130 학점 또는 그 이하로 축소 조정됨이 필요하고, 教授의 책임 강의 부담도 9 학점에서 6 학점 정도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教授의 수업 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두고서는 아무리 좋은 教育課程이라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大學이 教育課程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규적인 규제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즉 교육법 시행령 제 119조에 명시된 法定教養科目은 폐지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 그 운영과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이 대학에 일임되어야 한다. 特定教科目을 國策科目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전근대적 고정 관념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교육과정 개혁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세째, 高等學校 教育課程과 大學 教育課程 그리고 大學院 教育課程間의 합리적인 연계 방안이 더욱 연구되어야 하고, 특히 전공 분야에 있어서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大學院도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학의 전공 과목 중 전문성이 강한 과목은 대학원 과정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네째, 대학 나름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教育課程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문교부나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私立大學의 특성 및 전학 이념 등이 교육과정에 더욱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은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도전감을 유발할 수 있는 探究指向의 教育課程과 授業體制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大學의 모든 行政體制는 教育課程과 授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